

제 호

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

2. 대표자

(생년월일:)

3. 소재지(주소)

(전화번호:)

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」 제4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